

김영남 상표법 객관식 제4판 정오표

문제번호	정정 전	정정 후
46번	<p>문제</p> <p>⑤ 설탕과 소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 '꾸원설탕'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.</p>	<p>문제</p> <p>⑤ 설탕과 소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 '꾸원설탕'은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.</p>
	<p>해설</p> <p>⑤ 설탕에는 거절이유가 없으나, 소금에는 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의 품질오인의 우려가 있으므로, 출원일체의 원칙상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.</p>	<p>해설</p> <p>⑤ 출원일체의 원칙상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서 거절결정을 했던 것과는 달리, 개정법은 부분거절 제도를 도입하였다(제54조). 따라서 지정상품 소금에는 제34조 제1항 제12호 전단의 품질오인의 우려가 있으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, 설탕에는 거절이유가 없으므로 상표등록이 가능하다.</p>
85번	<p>정답</p> <p>④</p>	<p>정답</p> <p>⑤</p>
132번	<p>문제</p> <p>④ 2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 그 중 일부의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거절이유가 존재한다면,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서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.</p>	<p>문제</p> <p>② 2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 그 중 일부의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거절이유가 존재한다면, 그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.</p>
	<p>해설</p> <p>④ 출원일체의 원칙상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서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.</p>	<p>해설</p> <p>④ 출원일체의 원칙상 지정상품 전부에 대해서 거절결정을 했던 것과는 달리, 개정법은 부분거절 제도를 도입하였다(제54조).</p>
171번	<p>문제</p> <p>④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,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해당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.</p>	<p>문제</p> <p>법원은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, 제110조 제1항부터 제6항(손해액의 산정 등)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.</p>
	<p>해설</p> <p>④ 제110조 제2항 단서</p>	<p>해설</p> <p>④ 제110조 제7항</p>